



20 생명존중위원회 보고

제108회기 생명존중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강문구
서 기 김종화

1. 조직

1) 임 원

- 위 원 장: 강문구
- 부위원장: 정삼영
- 서 기: 김종화
- 회 계: 주남식
- 총 무: 맹인중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11. 1.(수) 12: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강문구, 부위원장 정삼영, 서기 김종화, 회계 주남식, 총무 맹인중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11. 10.(금) 18: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를 검토하고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다.

② 차기 회의는 11월 20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11. 20.(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저출산 안전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로 이첩해서 연구하기로 하다.

② 위원회의 연구 방향을 낙태 및 자살에 맞추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강사 선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11월 23일(목) 오후 8시 비대면회의로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3. 11. 23.(목) 20: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의안의 연구 및 사업들과 관련하여 당일 낮에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위원장 및 부서기와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다.
- ②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의안(78~82번)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4. 1. 12.(금) 18: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다.
 - 가.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13:00
 - 나. 장 소: 총회회관
 - 다. 강 사: 전 총신대 이상원 교수,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
 - 라. 축 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장 이성화 목사
 - 마. 강의로: 이상원 교수(30만원), 조성돈 교수(20만원) ※ 여비 포함
- ② 그 외의 세미나 준비 및 진행은 위원장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2024. 3. 8.(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금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의 책자 및 준비사항을 검토하다.
- ② 금일 세미나의 강사인 이상원 교수 및 조성돈 교수와 세미나의 주제 및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2024. 3. 19.(금) 16: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생명존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사회적으로 생명존중 운동(movement)을 지속하고, 총회 산하 지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유관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기로 하다.
- ② 생명존중 유관기관 선정을 포함하여 MOU체결 준비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2024. 4. 16.(화) 15: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생명존중 유관 4개 기관(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과 함께 MOU를 체결하기로 하다.

- ② MOU체결은 2024년 5월 9일(목) 오후 5시 30분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③ MOU체결과 관련하여 협정서 작성 마무리 및 행사 준비와 진행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④ 차기회의는 5월 9일(목) 오후 5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

☞ 일 시: 2024. 5. 9.(목) 17: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MOU체결을 위해 준비된 순서지 및 협약서를 확인하다.
- ② 제109회 총회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제출하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

☞ 일 시: 2024. 5. 30.(목) 17: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제109회 총회 때 보고할 위원회의 청원(안)을 검토하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되,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작성하기로 하다.
 - 가. 자살 및 낙태 등의 방지를 위한 목회매뉴얼 작성
 - 나. 5월 셋째 주일의 생명존중 주일 개념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낙태 및 자살(고독사) 등의 문제도 포함
 - 다. 위 ‘가’과 ‘나’의 사업 진행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의 상설화
 - 라. 청원 예산: 1,500만원
 - a. 회의비: 400만원, 목회매뉴얼 작성: 600만원, 생명존중 주일 캠페인 홍보: 500만원

3. 주요 사업

1)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

- (1) 일시: 2024년 3. 8.(금) 13:00
- (2) 장소: 총회회관
- (3) 강사: 전 총신대 이상원 교수,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
- (4) 참석인원: 20명
-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비고
총회예산	1,730,400	여비	710,000	임원 등
		강의료	500,000	이상원 교수 30 조성돈 교수 20
		인쇄비 등	404,000	인쇄비 366,000원 현수막 38,000원
		식대	116,400	
합계	1,730,400	합계	1,730,400	

2) 생명윤리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

- (1) 일시: 2024. 5. 9.(목) 17:30
- (2) 장소: 총회회관
- (3) 참여기관 및 참석자
 - 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
 - ②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장 강문구 목사 및 위원 4명
 - ③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
 - ④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
 - 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
 - ⑥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장진원 상임이사

4. 최종 보고

1) 제108회 총회 수입 사항

- (1) 저출산 정책 수립
- (2)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

2) 처리 내용

- (1) 저출산 정책 수립 →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로 이첩
- (2)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
 - ① 개념 정립 및 생명존중 인식(낙태문제 포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② 대사회적 운동 및 협력을 위해 생명윤리 전문기관과의 MOU체결

3) 최종 결론

- (1) 생명윤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사회적 운동 진행
 - ※ 8월 28일(수) 국회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관 '태아생명보호 방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 기획(우리 총회가 공동 주최 참여)
- (2) 지교회들의 생명윤리 전문기관을 통한 생명존중(자살 등)과 관련된 정보나 강연 등의 지원 협력 가능
- (3) 교회가 성도들의 자살 예방 교육 및 자살자 유족 돌봄을 위한 목회매뉴얼 작성 요망
- (4) 지속적 연구 및 사업진행을 위한 생명존중위원회의 상설화



*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 자료(축약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

- 낙태, 의사조력자살, 자살예방과 유가족 돌봄 -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월드뷰 대표주간

I. 낙태

학령인구가 감소세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국가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위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롭게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반생명적 사회구조다. 한국의 형법은 제269조(낙태)에서 임신부의 낙태시행을 형법상의 살인죄로 규정했고,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에서 의사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기되어 한국은 낙태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은 광범위하게 낙태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순간부터 시작된다

낙태문제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배속의 배아와 태아도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생물학, 유전학, 성경의 증언, 교회사는 수정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조건인 자기복제와 단백질생성은 수정란 형성 시점부터 시작된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의 유전자구성이 완성되는 시점도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이다. 성경은 임신 시점부터 출산시까지의 태아를 영혼을 가진 인격체를 뜻하는 인칭대명사로 호칭하고 있으며(욥 31:15; 사 44:24),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인 “브레포스”를 태아에게도 적용함(눅 1:41,44); 눅 18:15)으로써 배속의 태아가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임을 분명히 한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교회와 유대교가 남자의 영혼은 임신 후 40일 째 되는 날 신체 안에 들어오고 여자의 영혼은 90일 째 되는 날 신체 안에 들어와 살아 있는 인간의 생애가 시작된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적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 “40일-90일설”을 채택했으나, 초대교회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임신설을 채택했으며, 고배울현미경이 등장하여 난자와 정자를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에 임신설은 수정란설을 의미한다는 점에 정통신학과 과학자들이 합의를 이루었다.

낙태는 살인이다

헬라문화권에서는 낙태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토대로 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애아의 낙태를 권장했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어머니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서 이 아기를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아랍어 문화권에서는 낙태가 불법행위로 금지되었다. 고대 앗시리아(1450-1250, BC)의 법은 낙태를 유죄로 인정하고 낙태자에게 사형을 선고했

다. 유대인들은 낙태는 생명의 신성함의 원리를 범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낙태시술은 임신부에게 심각한 의료적 부작용을 안겨준다

에스트로젠 함량이 적은 피임약, 산전 진단, 월경규칙, 흡입술, 소파수술, 프로스타글란딘법, 양막 천자 소금물 주입법, 진공흡입술과 같은 낙태방법은 태아사망을 초래함을 물론 임신부에게도 심각한 부작용을 안겨 준다. 자연유산의 경우는 산모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으며 감염도 없으나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기살해라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임신부의 출혈, 감염, 마취의 부작용과 염수사용으로 인한 심한 경련, 자연유산과 조산의 증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우울증과 죄책감 등이 수반된다.

임산부의 남편도 낙태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낙태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임신부에게만 묻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도 지지받기 어렵다. 첫째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들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성의 기반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동의한 행위에 대하여 여자에게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 둘째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명확한 상보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이 상보적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와 이를 통한 임신의 경우에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임신이나 임신중절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는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다. 셋째로, 성경은 결혼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기능상의 주도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 주도권은 성관계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임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임신이나 임신중절의 결정에 있어서 임신부보다 배우자인 남자에게 더 큰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반생명성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유신체제 하에서 여론수렴 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가족계획법 성격으로 통과된 법으로서 당시의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전락시킨 법률이다. 모자보건법의 배경에는 토마스 맬더스의 인구론, 찰스 다윈과 프랜시스 골턴의 우생학이 자리잡고 있다. 산아제한을 정책의 우선목표로 설정한 정부는 우생정책을 표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우생학과 우생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입안하고 법제화시키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임신중절허용사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적응사유, 전염성 질환 사유, 윤리적 적응사유, 보건 의학적 적응사유 모두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수 없는 것들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의 의사낙태죄 조항을 폐기한 근거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임신부와는 구별된 독립된 생명체인 태아에 대한 허구적인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간이해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1973년과 1982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태아를 명확하게 인간으로 보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했다.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돕스 대 잭슨 판결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판결문에서 미국 텍사스 주 형법의 낙태금지 조항을 폐기한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공격하는 데 집중한 반면에 돕스 대 잭슨 판결을 읽어 보면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미국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정치참여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II. 의사조력자살, 자살예방, 자살유가족 돌봄

최근 유명배우 L씨가 마약흡입, 불륜, 거액의 영화 및 광고 위약금,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실추 등의 부담으로, 전직 대통령 N씨는 게임 기업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가족을 법의 처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전직 서울 시장 P씨는 성추문으로 인한 명예손상을 견뎌내지 못하고, 모 기독교인 권사는 딸의 의대 진학실패에 대한 상심으로, 은퇴 목사 C는 딸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살했다. 현재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며, 노인자살률 또한 1위다. 노인자살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빈곤, 질병, 외로움 등이 지적되었다.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무겁다

자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행하게 한 가치관은 사회적 명예, 사업성공, 자녀의 좋은 성적 등과 같은 현세적 가치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총합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마 16:26). 예수님의 가치관은 창조론과 구원론에 의하여 지원된다. 인간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탁월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신학적 근거다.

생명의 종결점

의사조력자살 혹은 안락사를 다룰 때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종결점 곧, 사망의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혼수상태의 환자에게서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행위와 뇌사상태의 환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시점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대뇌의 기능정지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대뇌사의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대뇌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기능정지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뇌사의 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심폐기능의 정지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대뇌의 기능정지를 죽음의 시점으로 삼고자 하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혼수상태의 환자는 죽은 사람으로 판단되고, 혼수상태의 환자에게서 연명장치를 떼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뇌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신진대사, 혈액순환, 호흡 등의 자율신경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은 신체가 살아 있다는 뜻이며, 더욱이 기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영혼은 뇌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넣어 주신 것이며(스 12:1), 그 존재와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으므로 혼수상태의 환자는

영혼과 신체가 살아 있는 환자로 보아야 한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최대 2주간 유지될 수도 있는 바,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동안은 살아 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심폐사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어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 몸의 신진대사가 정지되는 시점을 육체적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입장을 가리키며 바른 생명의 종결점이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세포는 서너 시간 정도 유기체적인 잔여생명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심폐사 이후의 인간은 영혼이 몸을 떠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관점은 인간의 생명을 피에 두고 있는 (레 17:11) 성경의 관점과도 조화된다. 따라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기독교윤리의 규범을 범하는 죄다

성경은 자살을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으나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성경은 자살이 하나님의 뜻과 규범에 반하는 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이 자살에 대하여 특별히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살이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하나님만이 행사하셔야 할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욥 1:21; 12:10)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탈취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자살은 하나님이 세계 안에 두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생득적인 본능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삶에의 본능을 주셨는 바(전 3:11), 자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연대관계 안에서 살도록 정해 주셨다. 자살은 이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자살자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 가족, 교회, 직장 - 와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들에게 끼칠 정서적인 충격이나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다.

자살은 삶 속에 찾아 온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죽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시도다. 이때 자살을 결행하는 자는 고통이 수반되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찾음으로써 자살의 충동을 극복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사회가 부과하는 벌을 자살을 통해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자살자들은 사회적으로 명확히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살을 통해 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와 책임의 존재인 바, 자신이 행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벌을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

자살의 충동은 극복이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자유로운 결단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의 행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통적으



로는 자살을 하도록 추동(推動)시키는 원인을 귀신의 작용으로 돌리는 해석이 빈번히 나타났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심리학과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로부터 원인을 찾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프로이드는 삶의 충동과 죽음에의 충동을 모두 본능적 충동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삶의 충동은 본능적 충동이나 죽음에의 충동은 외부에서 들어 온 것으로서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뒤르켐은 사회적 요인들이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사회적 요인들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자살의 유혹을 받는 자를 교회의 연대성 안에 끌어 들이라

노인 자살의 경우 결정적인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질병, 경제적 곤궁, 고독감이 바로 그것이다. 질병의 문제의 경우에 의료보험제도, 보건소, 지역 주민 센터 등과 협력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곤궁의 문제도 국가의 지원체계인 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전철탐승지원제도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이 이런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다. 노인의 고독감의 해소 문제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노인대학, 각 전도회, 구역이나 순 모임 등과 같은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울 수 있다.

자살한 신자와 하나님의 심판

불신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아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 조건에 어떤 다른 조건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살한 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갈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살한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현세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며, 이 평가에서 바른 삶은 칭찬과 상급을, 바르지 못한 삶은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살한 신자는 이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살한 성도를 위해서도 타 성도와 동일한 장례예식을 시행해야 한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다른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 다름없이 정중하게 장례를 집행해 준 것을 참고하고, 또한 장례예식은 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예식이 아니라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살한 신자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장례예식을 집행해 주어야 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되 이들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 생명존중 유관 4개 기관과의 MOU 체결서

생명윤리 연구 및 운동 협약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생명적인 관행, 문화, 법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한국 사회의 반생명적인 흐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인식의 증진과 반생명적 문화, 법, 구조, 교육을 친생명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개의 생명윤리 전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

- 1)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인식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한국 사회의 문화, 법, 구조, 교육이 반생명적이며 세속적인 이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국 사회의 생명윤리 인식을 증진하고 반생명적인 문화와 법과 구조와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2) 생명윤리 연구와 운동은 성경적인 바른 신학의 터전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생명윤리 연구와 운동의 신학적 터전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3) 생명윤리 연구와 운동은 바른 의료상의 전문지식과 법적인 전문지식의 뒷받침을 받을 때 바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문적인 생명윤리 연구 단체들이 의료적이고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4) 교단 산하 지교회들과 지교회 소속 성도들을 포함하여 전체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명윤리 교육과 훈련에 함께 협력하는 것에 동의한다.
- 5) 국가와 사회가 반생명 윤리적인 정책과 운동과 공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에 동의한다.



생명윤리 연구 및 운동 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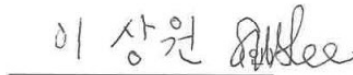
우리는 공동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세계관의 터전 위에서 전문적인 의료적, 법률적 지식을 근거로 생명윤리의 논리를 만든다. 또한 반생명적인 정책 및 교육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도회나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생명윤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이에 우리는 공동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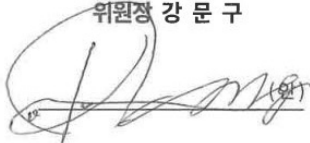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오 정 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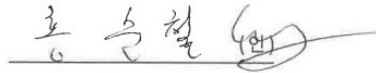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 상 원


이 상 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장 강 문 구


(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 순 철


홍 순 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이 봉 화


이 봉 화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조 성 돈


(인)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생명존중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생명존중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살 및 낙태 등의 방지를 위한 목회매뉴얼 작성

사회적으로 자살과 낙태 등의 생명 경시 현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교회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의 자살과 낙태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목회매뉴얼 작성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존중 주일 개념 확대

현재 5월 셋째 주일로 지정된 생명존중 주일은 출산 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낙태 및 자살(고독사) 등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존중 주일의 개념에 낙태와 자살(고독사) 등의 문제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낙태, 자살방지 등 활동을 전담할 생명존중위원회 상설화

본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제108회기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살 및 낙태방지는 사회적 긴박성(국가와 교회 미래가 달림)에 대한 목회매뉴얼 작성과 새로운 생명주일 개념 업무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총회에서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가 낙태, 자살방지 등 활동을 전담할 생명존중위원회 상설화를 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청원 예산: 1,500만원

회의비: 400만원, 목회매뉴얼 작성: 600만원, 생명존중 주일 캠페인 홍보: 500만원

2024년 9월

생 명 존 중 위 원 회

위원장 강 문 구

서 기 김 종 화